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무역항의 세부기준 위임 근거 마련〉

■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608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무역항의 세부기준 위임 근거 마련	2
2. 부칙	6
IV . 입법의 재정영향	7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일준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3. 19.
3. 회 부 일 : 2026.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을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화물 물동량, 컨테이너 항로 개설 여부 등과 같은 통계 지표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지표는 사후적 운영지표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항만을 구분함에 있어 항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이후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운영 사무가 시·도로 이관되었으나, 항만 인프라 확충 및 개발 수요 등에 부응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항만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지방관리무역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역항을 구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Ⅲ. 검토의견

1. 무역항의 세부기준 위임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무역항의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위치·구역 등) ① (생략)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위치·구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u>지역 균형발전</u>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② ----- ----- ----- <u>지역균형발전</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무역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3조제2항¹⁾).

2026년 4월 현재 31개소 무역항 중 14개소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17개소는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있음.²⁾

종전에는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청이 모두 해양수산부장관이었으나, 2021년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국가관리무역항의 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청은 시·도지사로 분리³⁾되었으므로, 엄밀한 기준에 의한 구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

그러나 현행 항만 분류체계는 수출입 화물량과 컨테이너 항로 개설 여부 등 사후적 통계지표에 치우쳐 항만의 실제 기능과 역

1) 「항만법」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위치·구역 등) ②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상·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 지방관리무역항: 지역별 육상·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 항만 지정 현황은 [참고 1] 참조

3)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관리청”이란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나.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개정안은 현행 항만 분류체계의 획일적 기준을 보완하고 실질적 분류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무역항의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⁴⁾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 법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서 세부기준이 정해지는 경우 향후 그 기준에 따라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 간의 지위 변경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이에 관한 절차도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09년 「항만법」 개정으로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을 구분하여 지정한 이후 상호 간 지위 변경 사례는 2026년 4월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음.

둘째, 안 제3조제2항은 동일 조항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표현이 중복 사용되어 조문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4) 참고로, 현행법 제3조는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므로, 세부 기준에 대한 위임 규정이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항만법」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위치·구역 등) ③ 연안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으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무역항의 세부기준은 국가관리 또는 지방관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거나 무역항에 대한 권한·사무의 이양의 기준이므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제처는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지정기준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위임체계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부 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이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표] 개정안 부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임.

IV. 입법의 재정영향

-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⁵⁾

문 의 처
02)6788-5427

5)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항만 지정 현황 [전국 62개 항만]

< 항만 지정 현황 : 「항만법」 시행령 제3조 >

무역항 (31개소)	국가관리 (14개소)	인천항, 경인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장항항, 목포항, 광양항, 여수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지방관리 (17개소)	서울항, 보령항, 태안항, 완도항, 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진해항, 속초항, 옥계항, 삼척항, 호산항, 제주항, 하동항, 서귀포항
연안항 (31개소)	국가관리 (12개소)	용기포항, 연평도항, 격렬비열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화순항
	지방관리 (19개소)	대천항, 마량진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강진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중화항, 진촌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애월항, 주문진항, 한림항, 성산포항

